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¹

허학영^{2*} · 유병혁³

A Review on the Legal System for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Protected Areas Status in DPRK¹

Hag Young Heo^{2*}, Byeong-hyeok Yu³

요약

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환경보호법, 토지법, 자연보호구, 보호지역 UN-list

ABSTRAC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have direct legislation on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until the early 1970s when the regime was still in the early stage. The Law on Land was enacted in 1977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land protection, protection zones, and forest formation and protection. The enactment of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86 made progress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he DPRK.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92 stipulated "the preservation and cre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Based on the Framework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subordinate statutes in various fields were enacted after

1 접수 2020년 10월 16일, 수정 (1차: 2020년 12월 17일), 게재확정 2020년 12월 29일

Received 16 October 2020; Revised (1st: 17 December 2020); Accepted 29 December 2020

2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Wonju 26441 Korea (hagyoung.heo@knps.or.kr)

3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과장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Wonju 26441 Korea (bhyu@knps.or.kr)

*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hagyoung.heo@knps.or.kr

the 1990s. While the committee designated and managed the protected zones in the early days, the Framework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stablished the ground for the designation of legally protected areas, and the Law on Protection of Scenic Spots and Natural Monuments enacted in 1995, and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nacted in 2009 provided the details. Furthermore, the types of nature reserves include biosphere reserves, primeval forest reserves, animal reserves, plant reserves, and scenic reserves. The 2n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established in 2007 based 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stated 326 protected zones in the DPRK. However, the 2018 United Nations list of Protected Areas shows only 31 registered zones, indicating the need to establish basic information on protected areas in DPRK.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conservation system in the DPRK. Considering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such as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and recovery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subject to exceptions under the curr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 Security Council, the United States),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identifying possibl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natural environment.

KEY WORDS: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N LAND, NATURE RESERVE, UNITED NATIONS LIST OF PROTECTED AREAS

서론

한반도가 분단된 이래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자 현안의 하나이며(Gong, 2006),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 상호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경기연구원(2018)¹⁾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환경 분야 중 남북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 에너지(52%), 산림녹지(25%), 물의 이용·관리(12%) 순으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협력 기본방향으로 지속가능한 협력(47%)을 최우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환경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체계와 현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협력추진을 위해 대북 제재 현황 등 협력 여건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연환경 보전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이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 왔으나, 북한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정보와 지식은 단편적이고 제한적이어서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Gong,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북한의 헌법을 비롯한 자연환경 보전 관련 법제의 근간을 살피고 그 발전단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 관련 법률의 수립 시기, 제정 목적, 법조항의 구성, 보호·보전 관련 주요 내용, 법률간 상호 연관성 등을 분석하고, 자연환경 보전 수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근거 법령, 보호지역 유형, 지정대상 등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보호지역 체계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하고, 자연환경 관련 북한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현황, UN 대북제재 현황 등 현재 상황에서의 자연환경 분야 남북 협력 여건 분석을 통해 향후 자연환경 분야 남북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 특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연구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부터, 환경 전반 관련 법률, 자연환경 관련 법률의 수립 시기, 목적, 법 조항 구성, 보호·보전 관련 주요 내용, 법률간 상호 연관성 등의 분석을 통해 자연환경 보호·보전 관련 북한의 법체계를 정리하고 이의 시대적, 내용적 발전단계를 고찰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관련 내용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자연환경 법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북한 자연환경의 실질적인 현지 내 보전 현황 파악을 위해 보호지역과 관련된 법제 분석을 통해 보호지역 유형, 지정 대상, 보호·보전수단 등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남북한 보호지역의 대표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자연보호구법(북한), 자연공원법(남한)의 용도지구, 관리계획 등 관리수단의 비교분석을 통해 남북한 보호지역 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북한의 보호지역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구축을 위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1) 경기연구원. 2018. 남북 환경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Table 1. National laws related to the natural environment in DPRK (enacted year, recently revised year)

Related to Land	Related to Environment	Related to Protected Areas
Law on Land (1977, 1999)	Law on Environment Protection (1986, 2014) Law on Forest (1992, 2015)	Law on Protection of Scenic Spots and Natural Monuments (1995, 2011)
Control Law on Environment Protection (1998, 2005)	Law on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1997, 2014) Law on Liver (2002, 2013)	Law on Nature Reserve (2009, 2013)
Law on Land Planning (2002, 2004)	Law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005, 2007) Law on Prevention of Taedong River Pollution (2008, 2014)	Law on Garden Forest (2010, 2013) Law on Fisheries (2015)

보고한 생물다양성협약(CBD) 국가보고서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내용을 분석하고, 국제 보호지역과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 발간된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지역 유형과 그 지정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남북협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분야에 북한이 가입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와 국제협약을 정리하여 협력 가능한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UN 및 양자 대북 제재현황 파악을 통해 현 제재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

북한의 환경관은 환경의 오염과 자연 파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의 이윤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연적인 재해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여, 진정한 환경보호와 공해방지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원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정권 수립기에서 1970년대 초까지는 환경 보호와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1977년 토지법의 제정을 통해 토지 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환경 보호에 대한 개념을 도입²⁾하기 시작하였다.

199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환경에 관한 사항(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57조)을 법조문에 포함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로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80년 헌법 개정(헌법 제9호 33조)을 통해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현행 헌법(1987년 헌법 제10호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의 헌법에서는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 모두를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의 제정(1986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토지법이나 인민보건법 등에 환경보호 관련조항을 규정하거나 주석명령이나 내각 정령의 형식으로 환경보호에 대해 규율한 반면 환경보호법 제정 이후에는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등의 형식으로 개별 하위법령들이 채택되어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들이 제정되어 분화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법무부, 2015). 따라서 북한의 자연환경 관련 법령은 토지법과 환경보호법(1986년 제정)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환경관련 법률로 국토계획법(2002년³⁾), 환경영향평가

- 2) 제19조(토지보호): 국가는 강하천 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여 토지류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 부를 늘리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 제25조(보호구역):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보호구역을 정함, 제32조(산림 조성 및 보호): 국토관리기관은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을 전군종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에 담당구역을 설정.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공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며 산림을 잘 보호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 함
- 3) 제1조(국토계획법 사명)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데 이바지함, 제2조(국토계획의 분류) 국토계획은 국토와 자원, 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 제16조(국토계획초안의 작성) 국토계획 초안에는 국토개발 전략과 혁명 전적지, 혁명 사적지의 보호, 부침땅과 산림, 하천, 호소, 바다의 리용, 자원개발, 도시와 마을의 형성, 휴양지구개발, 산업지구와 하부구조의 건설, 자연환경의 조성보호, 국토정리와 미화사업 같은 것을 반영

법(2005년)⁴⁾, 국토환경보호단속법(1998년)⁵⁾, 산림법(1992년)⁶⁾, 대동강오염방지법(2008년)⁷⁾, 바다오염방지법(1997년)⁸⁾, 하천법(2002년)⁹⁾ 등이 있다(Table 1).

특히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계획 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으로 6가지¹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6번째 원칙으로 환경을 파괴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2. 북한의 자연환경 보호지역 관련 법제

북한의 보호지역 관련 주요 법률로는 환경보호법, 자연보호구법,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원림법 등이 있으며, 이들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초기 보호지역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이나 정무원 결정을¹¹⁾ 통해 지정·관리하였고 1986년 환경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보호지역 유형이 구체화¹²⁾ 되고 효과적 관리를 위한 근거 조항들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경보호법은 총 4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제2장에서 보호지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을 다루고 있으며 제3장에서 환경오염방지 제4장에서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자연 보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의 선정(제11조),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의 보호(제

14조), 자연생태계의 균형파괴행위금지(제16조), 문화휴식터 건설과 원림, 복지조성(제17조), 환경보호기준의 준수(제19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환경을 파괴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 보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¹³⁾은 물론 행정적 책임¹⁴⁾과 형사적 책임¹⁵⁾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사항으로 2011년 8월 구법(환경보호법)에서는 제7조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 시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된 정책으로, 이들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투쟁한다는 항목이 있었으나, 2013년 개정 법령에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1995)’은 명승지·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이를 보호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총 4장¹⁶⁾ 44조로 구성되어 있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로 명승지에는 이름난 산과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지역이, 천연기념물에는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자연물이 속한다(제2조). 명승지·천연기념물의 조사와 관련하여 명승지·천연기념물의 조

- 4) 제1조(환경영향평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 심의, 환경영향평가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환경파괴와 그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고 깨끗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 5)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의 사명(제1조): 국토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를 엄격히 단속하여 국토와 자원, 환경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 이바지
- 6) 산림법의 사명(제1조):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
- 7) 대동강오염방지법의 사명(제1조): 대동강의 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동강의 수질과 환경을 보존, 개선
- 8) 바다오염방지법의 사명(제1조):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 9) 하천법 사명(제1조): 하천의 정라보호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하천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고 국토를 아름답게 꾸리는데 이바지
- 10) 국토계획법 제11조(국토계획작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 1. 부침땅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2. 도시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한다. 3. 해당 지역의 기후 풍토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경제발전 전망과 실리를 타산하여야 한다. 5. 국방상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6. 환경을 파괴하지 말아야 함
- 11)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보호지역은 백두산 식물보호구(1946년 지정)이며, 1976년 정무원결정(제55호)에 의해 다양한 보호지역 유형을 지정
- 12) 환경보호법 제11조(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 선정): 환경보호를 위하여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13) 제56조 (민사적책임) 환경을 파괴시켜 인민들의 건강과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 14) 제57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담당구간에 대한 보호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2. 자연보호구, 특별보호구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자연농지를 손상, 파괴하였을 경우, 4. 천연기념물에 손상을 주었을 경우, 5. 승인없이 지하수를 뽑아 땅아 꺼지게 하였을 경우, 6. 철길보호구역에 침해하였을 경우, 7.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8. 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 검은연기를 내보내는 료전기재를 운행할 경우, 9. 주민구역과 주요도로주변에서 오물을 불태울 경우, 10. 휴지통, 오물통, 오물장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11.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가지 않을 경우, 12. 정확하지 않은 버림물을 바다, 하천, 호수, 저수지에 내보냈을 경우, 13. 승인없이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사를 달 경우, 14. 오염방지설비를 갖추지 않은 배를 운항할 경우, 15. 사람에게 해롭거나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키는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할 경우, 16. 이밖에 환경보호법규를 어겼을 경우
- 15) 제58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16) 제1장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의 기본, 제2장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제3장 명승지, 천연기념물 관리, 제4장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사, 등록원칙(제5조)하에 명승자천연기념물의 조사방법(제10조)¹⁷⁾, 명승자천연기념물의 조사내용(제11조)¹⁸⁾, 명승자천연기념물에 대한 관찰(제24조)¹⁹⁾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명승자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항목으로 관리원칙(제6조), 대중적인 명승자천연기념물보호(제7조), 명승자천연기념물보호구역(제23조)²⁰⁾, 명승자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보존(제28조)²¹⁾, 산림자원의 보호(제29조), 동식물자원의 보호(제30조), 명승자천연기념물 자료의 영구보존(제37조) 등을 두고 있다. 북한(2002년 1월 현재)에는 447종류의 대상이 천연기념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식물이 214종류, 동물이 95종류²²⁾, 지리 76종류, 지질 55종류로 알려져 있다(Gong, 2006).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의 설정과 조사,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 주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45호로 채택되었으며, 총 4개장²³⁾ 43조로 구성되어 자연보호구의 정의에서 지정·조사·관리를 아우르고 있다. ‘자연보호구’는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상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구역으로 자연보호구에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같은 것이 속한다(제2조). ‘자연보호구법’은 “환경보호법(11조)”의 보호구 유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자연보호구 유형에서 수산자원보호구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수산법(2015년 제정)에 의해 지정·관리²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호구의 지정은 원시림이 퍼져있는 지역, 동식물종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지역, 특산종·위기종·희귀종 동식물이 있는 지역, 특출한 자연경관의 다양성으로 이름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법 제10조) 그 특성에 따라 중심구역, 완충구역 같은 기능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앙국토환경

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제17조) 하고 있다. 자연보호구의 특성에 맞게 관리규범을 바로 정하고 정연한 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해 ‘자연보호구관리계획’을 5~10년 주기로 작성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도록(제25조, 제27조) 하고 있으며, 자연보호구의 조사사항(제20조)으로 ①지질, 지형, 토양, 기후 같은 자연지리적 환경의 변화 상태, ②동식물의 종류와 구조, 분포상태, 이동정형, ③특산종, 위기종, 희귀종 동식물의 마리수와 분포상태, ④자연보호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외부적인 요인들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보호구에서의 금지사항으로 ①나무를 베는 행위, ②동물을 사냥하거나 식물을 채집하는 행위, ③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④탄광, 광산, 채석장 같은 것을 개발하는 행위, ⑤땅을 파거나 개간하는 행위, ⑥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자연경관을 파괴할 수 있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⑦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 ⑧그밖에 자연보호구의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언급하고 있다(제32조). 특히 자연보호구 중심구역은 사람의 출입과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활동계획을 내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완충구역의 경우도 자연보호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학연구, 실습, 표본채집, 답사, 등산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보호법과 유사하게 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제41조), 행정적책임(제42조), 형사적책임(제43조) 조항을 두어 자연보호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이사항으로 자연보호구의 지정기준(10조) 및 조사사항(20조)에서 언급되어있는 “특산종, 위기종, 희귀종”의 개념과 이를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해 유관 법률²⁵⁾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림법’은 원림²⁶⁾의 조성·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시와 마을을 아름답게 꾸리고 위생문화적인 생활환경을

- 17)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과 해당 전문기관은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승지의 지형도와 천연기념물의 위치도를 만들고 천연기념물을 사진으로 고찰시켜야 한다.
- 18) 명승지·천연기념물의 조사내용: 1.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위치, 2.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역사적유래, 3.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크기와 특성, 리용 또는 보존가치와 전망, 4.명승지, 천연기념물이 있는 지대의 자연지리적상태, 5.명승지 안의 생태계에 대한 자료
- 19)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담당관리원을 두고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상태에 대한 관찰정형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일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 20)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 21)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동식물은 원종을 보존하며 그 자원량이 줄어드는 종류는 증식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22) 공우석(2006)의 “북한의 자연생태계” 282페이지에서 동물을 12종류로 언급하고 있으나, 385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짐승류 26종류, 황새와 두루미류 19종류, 바다새와 물새류 12종류, 기타 새류 10종류, 물고리류와 조개류 10종류, 양서류와 파충류 8종류, 곤충류 2종류, 집짐승류 8종류 등)
- 23) 제1장 자연보호구법의 기본, 제2장 자연보호구의 설정, 제3장 자연보호구의 조사, 제4장 자연보호구의 관리
- 24) 수산법 제32조(수산자원보호조치)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하여 수산자원보호구를 설정하고, 제33조(수산자원보호구관리)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관리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보호구안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하도록 하고 있음
- 25) 환경보호법, 자연보호구법, 산림법, 하천법, 원림법, 토지법, 유용동물보호법,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등
- 26) 제2조(원림의 정의) 원림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과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여러가지 식물로 아름답고 위생 문화적으로 꾸러 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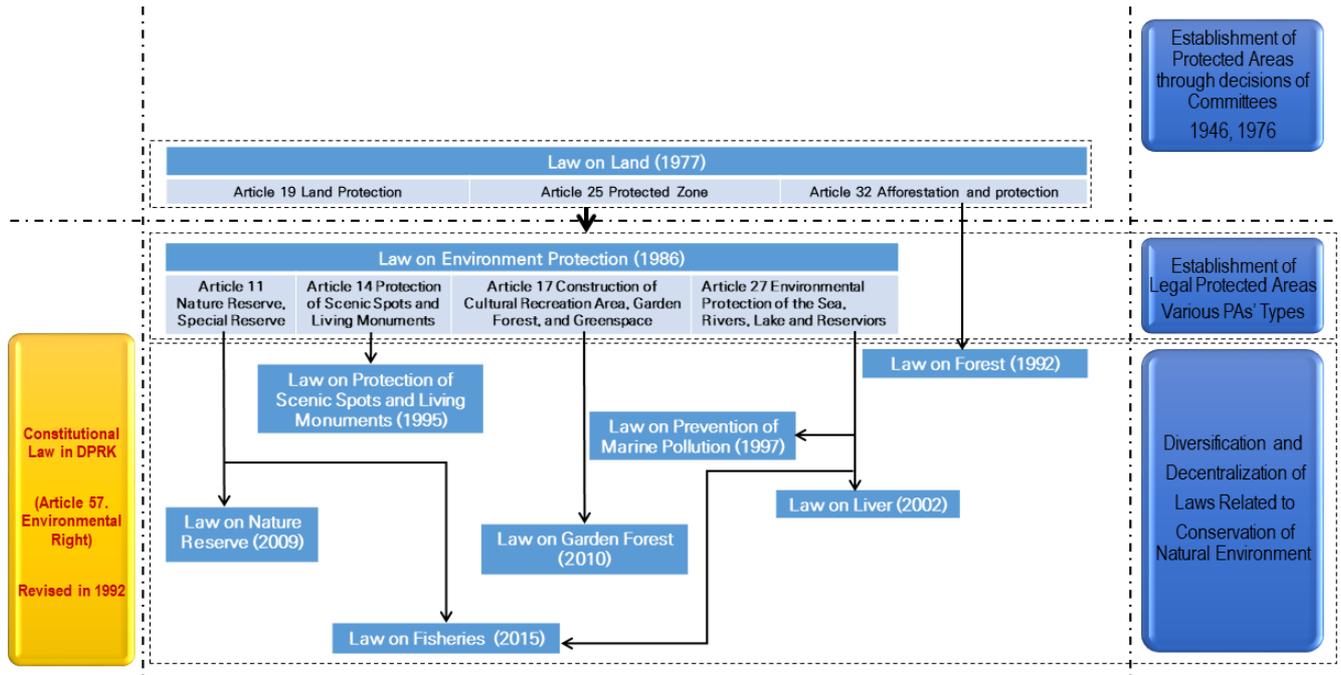


Figure 1. Legal Framework for Nature Conservation in DPRK.

마련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총 4개장²⁷⁾ 37조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건설정책에 기초하여 원림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원림조성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9조). 원림의 관리를 위해 ①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② 나무를 베거나 수종을 바꾸거나 나무가지, 꽃을 꺾는 행위, ③ 나무와 잔디를 뜨거나 열매, 종자를 따는 행위, ④판상용동식물을 잡거나 채집하는 행위, ⑤특지를 못쓰게 만드는 행위, ⑥ 원림관리시설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⑦농작물을 심는 행위 등은 승인 없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제30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북한은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 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의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 내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

정하여 분법화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지정하였으며, “환경보호법” 제정 이후에 “자연보호구법” 등 다양한 관련법들이 세분화되어 개별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

3. 북한의 자연환경 보호지역 지정 현황

생물다양성협약(CBD)에 제출한 북한의 “제1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NBSAP, 1998)²⁸⁾”에서는 북한 최초의 자연보호지역으로 1954년 4월에 지정된 묘향산 자연보호구(1954)를 소개²⁹⁾하고 있으며 전체 보호지역 면적이 24,286km²(북한 국토면적의 19.78%)이고 이 중 자연보호구가 6,969.27km²(국토면적의 5.68%)에 이르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보호지역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총 10개 유형³⁰⁾ 127개소이다. 목록에 제시된 보호지역의 유형별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생물권보호구 1개소, 자연공원 21개소, 자연보호구 8개소, 경관보호구 24개소, 식물보호구 14개소, 동물보호구 14개소, 바다새보호구 6개소, 철새

특화지역이다. 원림에는 공원, 유원지, 도로와 건물주변의 특지, 도시풍치림, 환경보호림, 동식물원, 온실, 양묘장, 화포전 같은 것이 속한다.

27) 제1장 원림법의 기본, 제2장 원림의 조성, 제3장 원림의 관리, 제4장 원림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28) 북한은 1994년 10월에 생물다양성협약의 정식 체결국이 되었으며, 세계환경기금(GEF) 지원으로 작성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MAB 위원회(2005)에서 발간한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에 따르면 북한의 보호구 설정역사를 1946년 4월 29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공포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으로 백두산식물보호구 설정을 그 시작으로 기술하고 있음.
 30) 생물권보호구, 자연공원, 자연보호구, 경관보호구, 식물보호구, 동물보호구, 바다새보호구, 철새(습지, 번식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Table 2. Protected Areas in DPRK (DPR Korea, 2007)

	Classification	Name	Number	Area(ha)
I	Strict nature reserve	Mt. Oga & Kwanmo Peak Nature Reserves and others	4 ³¹⁾	63,912
		Core areas of Biosphere Reserves of Mts. Paektu and Kuwol	2	24,247
II	Nature park	Mt. Kumgang Nature Park, Mt. Myohyang Nature Park, Mt. Chilbo Nature Park, etc.	21	167,900
III	Natural monuments area		127	191,157
IV	Habitat/species reserve	Plant reserve	25	25,698.2
		Animal reserve	25	58,973.4
		Migratory bird(wetland/breeding area) reserve	24	26,917.5
		Sea-bird reserve	7	214.5
V	Landscape reserve		60	223,667
VI	Resources reserve	Marine resources reserve	26	50,690
		Plant resources reserve	4	6,659
		Buffer zones of the Mt. Paektu Biosphere Reserve ³²⁾	1	36,000
Total				879,275.2 ³³⁾

DPR Korea 2007.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of DPR Korea. pp.31-32.

(습지) 보호구 12개소, 철새(번식지) 보호구 15개소, 수산자원보호구 12개소이며, 이의 총 면적은 6,946.45km² 전술한 자연보호구 면적과 유사하나 다소 차이가 있다. 127개 보호지역을 기준으로 지정 시기를 분석해보면 북한이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이듬해인 1995년 가장 많은 57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976년 29개소³⁴⁾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 제출된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에서는 새롭게 지정된 보호지역으로 38개 지역의 목록과 함께 전체 보호지역을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분류시스템에 맞춰 총 326개소 8,792.75km²(국토면적의 7.2%)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 보호지역 확대 목표로 2010까지 국토면적의 8%까지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생물다양성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2016)에서는 보호지역과 관련하여 “자연보호구법” 제정(2009년)과 안변지역에 두루미보호구(63ha) 지정(2010년)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존 보호지역에 대한 지형도, 하천분포도, 식생도,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변화 추정도의 작성과 새로운 보호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생태적 격차(ecological gaps) 분석을 수행하여 23개 지역³⁵⁾ 보호구 네트

워크(regional reserve networks)를 설계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양지역의 10% 보호지역 목표 성취를 위해 영해(12해리 이내)에 15개 수산자원특별보호구를 중심으로 2,200km²의 연안해양 보호구 지정을 계획하고 논의 중임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보호지역 현황 정보 중 명칭, 면적, 위치(시군 또는 리 단위의 주소), 지정시기가 알려져 있는 곳은 “제1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에서 언급한 127개소의 보호지역이며, 공식적인 보호지역 경계 즉 면 단위의 공간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국제적으로 인증된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2018년 보호지역 UN-list(31개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지 5개소, 람사르 습지 등재지 2개소의 위경도 좌표(점 단위의 공간정보)가 제공되고 있다(Table 3, Figure 2). 북한의 보호지역 정보는 보고시기에 따라 그 유형과 지정 면적이 다소 차이를 보이며, 제한적이거나 GIS 공간정보를 갖고 있는 보호지역은 38개소로 북한의 보호지역 DB 정리와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31)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의 본문(p.34)에서는 6개 지역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표에서는 4개소로 표기하고 있음
 32)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의 본문(p.35)에서는 구월산과 백두산 2개 생물권보호구를 언급하고 있으며, classification VI의 총면적도 96,588.6ha로 기술하고 있으나, 표에서는 구월산 1개소만 기술하고 있으며 총면적도 93,349ha로 다소 차이를 보임.
 33) 실제 표에서 제시한 326개소 보호지역 면적의 합은 876,035.6km²이나,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의 본문과 표의 총계에서 8,792.75km²를 기술하고 있어 이를 따라 기술하였음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MAB 위원회(2005)에서 발간한 “우리나라의 자연보호지역”에 따르면 정무원결정 제55호(1976년 10월 2일)에 의해 44개 보호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1998년에 발간한 국가전략에는 29개소만 목록에 나타남.
 35) Mt. Paektu BR Network, Songjinsan Reserve Network, Mt. Chilbo Reserve Network, Chail Peak Reserve Network, Mt. Oga Reserve Network, Mt. Rangrim Network, Mt. Myohyang BR Network, Mt. Kuwol BR Network, Mt. Chuae Reserve Network, Mt. Taegak Reserve Network, Mt. Kumgang Reserve Network 등

Table 3. International Protected Areas in DPRK including 2018 UN-list

Classification			Name	Number
2018 UN-list*	II	National Park	Kuwol, Lake Jangjin, Lake Sohung, Monggum Port, Mount Chilbo, Mount Jangsu, Mount Kumgang, Mount Myohyang, Mount Myohyang, Pakyon	9
	III	Natural monument	Kangryong Crane Habitat, Kungangguks (Pentactina rupicola), Monggumpho Sand Hill, Ongjin Crane Habitat, Outer Kumgang Geoclemys veevesii (Gray) Habitat, Paechon Crane Habitat, Paektu-san Korean Tiger, Phanmun Crane Habitat, Ryongyon Crus vipio (Pallas) Habitat, Samjiyon Deer, Solbong-ri Pine Tree Community, Unmu Island Sea-Bird Breeding Site	12
	IV	Habitat/Species Management Area	Mount Oga NR, Mount Paekdu NR, Chail Peak, Chongchon River (Sweet Fish), Jangsan Cape, Kosong Bay, Kumya Seaside (Botanic), Sonchon-rap Island (Breeding Seabird), Taegam Island (Breeding Seabird), Musudan	10
UNESCO Biosphere Reserve**			Mount Paekdu(1989), Mount Kuwol(2004), Mount Myohyang(2009), Mount Chilbo(2014), Mount Kumgang(2018)	5
Ramsar Wetland***			Mundok Migratory Bird Reserve(2018) Rason Migratory Bird Reserve(2018)	2

* UN. 2018. UN List of Protected Areas of DPRK.

**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20%20%20%20biosphere-reserves/asia-and-the-pacific/>

*** <https://rsis.ramsar.org/ris/2343>, <https://rsis.ramsar.org/ris/2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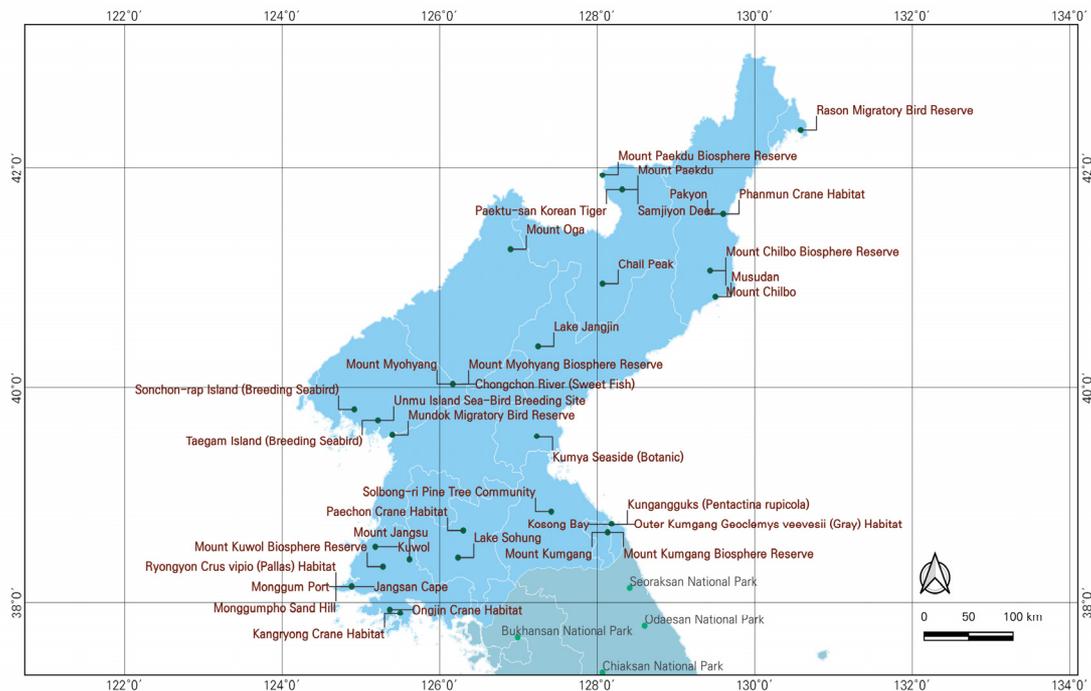


Figure 2. Location of Protected Areas in DPRK.

4.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여건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체계 고찰에 이어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여건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자연환경 분야 국제활동 현황 및 대북제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Table 4에서 볼 수 있

듯이 북한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다양한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UNEP, UNESCO, UNESCAP, IUCN 등)와 국제협약(CBD, CCD, Ramsar 등) 네트워크의 효과적 활용은 향후 자연환경 분야 남북협력에 많

Table 4.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Organizations joined by DPRK

International Conventions / Organizations	Joined Yea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Biodiversity	signed June 11, 1992; approved October 26, 1994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adhered to text January 16, 1996; adhered to revised text August 25, 2003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accepted July 21, 1998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acceded December 29, 2003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entry into force May 16, 2018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1974
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1992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1994
IUCN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1963(NCUK), 2017(MoLEP)

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경우 1963년부터 비정부기구인 북한자연보전연맹(NCUK)이 지속적으로 활동해오다가 2017년 국토환경성이 정부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랍사르협약 170번째 당사국으로 가입('18.5.16. 공식 발효)하고 2개 랍사르 습지 지정(Mundok Migratory Bird Reserve, Rason Migratory Bird Reserve) 등 습지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북 경제 제재와 관련하여 'UN 안보리 결의안(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이 10여 차례 채택되었으며 UN SCR 2270(2016년)부터 경제 일반으로 제재 성격이 변화되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외 운송 제재 강화, 해외노동자 24개월내 송환,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업권 거래 중지 명확화, 북한의 식료품·농산물·기계류·전기기기·광물·토석류·목재류·선박 수출 금지 등 제재가 강화되었다. 양자 제재의 경우 미국은 2008년 이후 북한을 특정한 행정명령을 6회 채택하였으며,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018년에 모든 행정명령 포괄정리하여 대북제재규정을 개정·발표³⁶⁾하였다. 주된 내용이 모든 물자·용역·기술의 수출입금지, 모든 신규 대북투자 금지 등으로 제재가 강화되어 실질적인 협력활동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제재 예외(면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실종미군 발굴 활동, 정보유통증진·평화적 통일 기여 활동³⁷⁾, NGO 활동³⁸⁾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재 예외 대상으로 되어있는 활동 중 지속가능 농업, 깨끗한 물 등 비영리적 개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은 현 시점에서 자연환경분야 남북협력 사

업 발굴을 위한 실현 가능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과 고찰 및 시사점

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체계는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 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의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 내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

자연환경 보호지역과 직접 관련된 법령으로는 “환경보호법”, “자연보호구법”,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등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유형의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심 보호지역인 자연보호구 지정은 ①원시림이 퍼져있는 지역, ②동식물종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지역, ③특산종·위기종·희귀종 동식물이 있는 지역, ④특출한 자연경관의 다양성으로 이름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성에 따라 중심구역, 완충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자연보호구 관리계획’은 5~10년 주기로 작성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연보호구의 조사사항으로 특산종·위기종·희귀종의 분포 상태와 더불어 개체수(마리수)까지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36)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13687호, 13722호, 13810호의 이행,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의 적용과 이행을 위한 ‘대북제재 규정(31 CFR Part 510)’을 수정

37) 대통령이 의회에 서면으로 요청, 30일 ~ 1년 면제

38) 인도주의 지원 전염병 예방, 영유아 건강, 지속가능 농업, 깨끗한 물 등 비영리적 개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

Table 5. Comparison of Laws on Protected Areas(Law on Nature Reserve(DPRK), Law on Natural Park(ROK))

	Law on Nature Reserve(DPRK)	Law on Natural Park(ROK)
Zoning System	Central Zone Buffer Zone	Natural Preservation Zone Natural Environmental Zone Cultural Heritage Zone Village Zone
Management Plan (Level of Plan, Cycle)	Nature Reserve Management Plan (Site Level, 5~10 year)	Park Master Plan (Natural Park Level, 10year) Park Plan (Site Level, 10year) Conservation & Management Plan (Site Level, 10year/if necessary 5year)
Survey items	1. the state of natural geographic environments, such as geology, topography, soil, and climate. 2. Types and structures of animals and plants, distribution status, and migration pattern 3. Population and Distribution Status of Endemic Species, Endangered Species, and Rare Species 4.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at can adversely affect nature reserves	1. Ecosystem status of natural parks and distribution and habitat status of wildlife 2. Status of soil, topography, and landscape resources 3. Other matters recognized by the Park Service that need to be investigated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al parks
Survey Cycle	-	5 year
Eco Corridor	Ecological corridor shall be established so that animals and plants can freely move or spread among nature reserves	Facilities or struct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not be allowed to pass through the ecological axis and ecological corridor in the natural park

자연자원 상태에 조사뿐만 아니라 관리 여건 조사라고 할 수 있는 내·외부적 부정적 영향요인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자연보호구법과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의 주요내용을 비교해보면 용도지구 설정, 계획체계, 조사항목, 조사주기 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계획체계와 용도지구 설정이 우리나라에 비해 단순하고 조사 주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최근(2019년) 10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변화되어 조사주기를 명시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조사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Table 5).

북한의 현지내 보전수단을 파악하기 위한 보호지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보호지역의 유형은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분류체계를 따라 보고되고 있어서, 보호지역 유형이 북한 관련법제의 명칭과 다소 차이를 보이며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는 자연공원 제도가 없으나 생물다양성협약 국가전략에서는 자연공원이 21개소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보호지역 유형별 개소수와 면적 등이 작성 주체와 시기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동일 보고서 내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있다.

북한의 보호지역별 명칭, 면적, 위치, 지정시기 등 기초적인 정보의 경우 “제1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1998

년)”에서 제시한 127개소가 가장 많은 목록이며, GIS 위치 공간정보의 경우는 위경도 좌표(점단위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보호지역은 단지 38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에 보고하고(2007년) 있는 보호지역이 총 326개소인 반면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 강력한 대북제재 상황에서도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은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지역의 기능과 현지내 보전 역할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이미 가입 활동하고 있는 국제협약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구축을 위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보고·제출한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살펴 보았으나,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한계를 인식하고 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는 다소 제한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통합적인 보전체계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현황 파악이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보다 실증적인 정보 구축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

